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97
----------	------

2020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0년 5월 25일
- 다. 회부일 : 2020년 5월 29일
- 라. 상정일 :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2012.10.01.부터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17.7.7.부터 3년간 재위탁하여 2020.6.30.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2년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2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
- 현 수탁법인이 위기청소년 종합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2.06.30.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재계약 사유
 - 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One-Stop개념의 종합적인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시설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현 위탁법인은 1956년 광주살레시오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활 지원 등 올바르게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청소년교육, 상담, 복지에 기여하고 있음
 -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원스톱 전문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가출청소년일시 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체험관), 대안학교(도시형, 위탁형), 인턴십 교육 지원사업, 가정법원 교육명령 수탁기관, 사회가장자리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거리상담 등 청소년일시쉼터사업
 -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대안교육 사업
 -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활동 등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
 - 청소년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모델 정립사업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시설규모 : 대지면적 22,650㎡, 건물연면적 6,462㎡ (지하 1층, 지상 4, 5층)
- 주요시설 : 상담실, 집단상담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룸학교, 꿈에학교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2년(2020.7.1. ~ 2022.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80백만원('20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46백만원, 운영비 458백만원, 사업비 1,176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3년, 2017.7.1.~2020.6.30.)이 종료될 예정인 강남구 소재 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와의 재계약 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시설규모 : 대지면적 22,650㎡, 건물연면적 6,462㎡(지하1층, 지상 4, 5층)
- 주요시설 : 상담실, 집단상담실, 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룸학교, 꿈에학교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위탁기간 : 2년(2020.7.1. ~ 2022.6.30.)
- 선정방식 : 재계약(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소요예산 : 2,580백만원(2020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시립청소년드림센터(이하 '드림센터')는 청소년이 자립, 상담, 교육, 보호, 예방을 통해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시 쉼터, 성문화센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지원 청소년특화기관으로, 2012년 10월부터 개원하여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이하 '살레시오회')에 8년간 위탁하여 운영해 왔음.

〈 민간위탁 추진현황 〉

- 1차 2011.12.2. ~ 2015.6.30.(3년)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공개경쟁
- 2차 2015.7.1. ~ 2017.6.30.(2년)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재계약
- 3차 2017.7.1. ~ 2020.6.30.(3년)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공개경쟁

〈 위 치 도 〉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진로사업을 하는 드림센터,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시쉼터, 청소년 성상담을 전담하는 성문화센터 등 총 3개의 기관을 드림센터로 통합운영하고 있고, 본 동의안은 3개 기관이 통합된 드림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에 관련한 사항임.
- 드림센터는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총 39억 8천만원의 예산 중 15억 8천만원의 사업비와 50명(정규직 41명, 비정규직 9명)의 인력으로 4개 분야, 8개 사업, 1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세입·세출 현황 〉

구분	예산과목	2020년도예산	비율	비고
세입	총 계	3,981,078	100.0%	
	100 사업수입	164,744	4.1%	
	200 사업외수입	1,045,337	26.3%	
	300 보조금	2,770,997	69.6%	
세출	총 계	3,981,078	100.0%	
	100 인 건 비	1,256,006	31.5%	
	200 물 건 비	184,714	4.6%	
	300 경상이전	233,011	5.9%	
	400 자본지출	11,480	0.3%	
	500 사 업 비	1,581,228	39.7%	
	600 사업외 지출	669,043	16.8%	
700 예비비 및 기타	45,596	1.1%		

- 평생교육국은 수탁법인인 살레시오회가 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대안학교, 교육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탁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계약 추진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드림센터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상담·교육·치료),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활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동의안의 제출시기, 의회동의 없이 추진되었던 지난 민간위탁 협약의 합법성 여부,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 관리수준, 인사관리,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드림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4월 제293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수탁법인인 살레시오회의 재계약 포기 의사표시로 인해 안건이 철회되었고, 살레시오회가 포기의사를 반복하여 금번 정례회에 다시 제출되었음.

※ 제293회 임시회에 회부(2020.4.8.)안건 목록 발췌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제출일자	소관위원회
21	1453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 장	2020.4.3.	행정자치

※ 제293회 임시회 철회 안건 목록 발췌

연번	제출자 (소관위원회)	안 건 명	회부일자	철회요청일자
1	시 장 (행정자치)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4.3.	2020.4.14.

- 의회는 본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위탁사무의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위탁기간 만료시점(2020.6.30.)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여, 수탁기관의 변심과 공공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의회의 심의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2012년 11월 개관 이후 드림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없이 '보고'로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고, 개관 8년이 경과한 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최초로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의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동의현황, 연혁, 민간위탁 추진 현황 〉

○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 현황

- 의회 동의 일자 : 없음(미동의)
- 의회 보고 일자 : 2015.3.2.

○ 연혁

- 2011년 12월 :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와 위수탁협약서 작성
- 2012년 8월 : 리모델링 공사 완료
- 2012년 9월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업무 게시
- 2012년 10월 : 이룸학교, 드림놀이터, 휴카페, 운영게시
- 2012년 10월 : 드림청소년쉼터 운영게시
- 2013년 6월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개관식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2011.12.2. ~ 2015.6.30.(3년) 공개경쟁 -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 2차 2015.7.1. ~ 2017.6.30.(2년) 재 계약 -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 3차 2017.7.1. ~ 2020.6.30.(3년) 공개경쟁 -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 한편, 드림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현재부터 역산하여 보면, 최초 민간 위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여야 하나, 제1차 민간 기간은 2011년 12월2일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3년 7개월을 위탁기간으로 하여 협약하여,

조례에서 정한 최대위탁 기간을 위반하였으며, 이를 견제·감독할 수단인 의회의 동의도 지연하여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였는바, 그간 평생교육국에서 추진해 온 드림센터 민간위탁 추진의 절차적 합법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0.>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1차 시립청소년드림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발체 〉

제4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센터의 관리·운영 위·수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12월 2일

"갑"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을"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449)

대표 (이사)

남상헌 (인)

○ 평생교육국에서 생산한 문서마다 드림센터의 최초 민간위탁일을 상이하게 표기하고 있는바, 의회에서 기대하는 민간위탁 관리 수준을 평생교육국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의안번호 1597번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붙임_민간위탁 성과보고서 1P
- 1차 2011.12.22.~ 2015.06.30. (3년,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2019 종합성과결과보고서의 시설개요 발췌
- 수탁기간 : 2017.07.01.~2020.06.30. (최초수탁일 : 2011.10.01.)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중 ‘민간위탁 추진 현황’ 발췌
- 1차 2011.12.2.~ 2015.6.30.(3년) 공개경쟁

○ 드림센터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종합성과 평가에서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재계약을 위한 최소 조건(종합평가 60점이상)은 갖춘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49p ‘재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발췌
- 종합성과평가 결과(60점 미만시 재계약 불가) 검토

〈 청소년드림센터 종합성과 평가점수 〉

	계	사업인프라 (25)	사업활동 (10)	질적수준제고 노력(10)	사업성과 (35)	이용자 만족도(20)	가감점
평정점수	87.8	21.8	8.8	7	33.1	17.1	0
100점환산	88.8	87.2	88.0	70.0	94.6	85.5	

〈 드림일시청소년쉼터 종합성과 평가점수 〉

	계	사업인프라 (25)	사업활동 (10)	질적수준제고 노력(10)	사업성과 (35)	이용자 만족도(20)	가감점
평정점수	84.2	21.8	9.7	5	29.9	17.8	0
100점환산	84.2	87.2	97.0	50.0	85.4	89.0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합성과 평가점수 〉

	계	사업인프라 (25)	사업활동 (10)	질적수준제고 노력(10)	사업성과 (35)	이용자 만족도(20)	가감점
평정점수	86.7	21.8	9.7	5	34	16.2	0
100점환산	86.7	87.2	97.0	50.0	97.1	81.0	

- 사업인프라 분야는 조직구성, 고용안정, 재정집행 효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근로계약 시 법인과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드림센터는 시설장과 계약하고, 근로계약서도 미비치하였으며, 시설공사시 미감독, 미검수 등 공사관리의 미흡이 지적되었음.

※ 본 동의안의 붙음(민간위탁 성과보고서) 2p 발췌

·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임금계산방법, 임금구성항목, 지급방법)을 포함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시 계약당사자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인 법인과 계약하여야 하나, 시설장(서울시드림센터장)과 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미비치

- 근로계약서를 법인이 아닌 시설장이 작성한 사안은 2018년 정기 지도·점검 지적에 이어 금번 2019 종합성과평가에서 반복지적되고 있으며, 시정 불이행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불이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바,
평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드림센터의 시정명령불이행과 불이행 사항을 묵인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드림센터는 도시형대안학교인 이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룸학교에서는 균형있는 식단을 기반으로 급식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닌 라면, 버거, 유명 브랜드 커피, 편의점 등에 급식비를 집행하고 있어,
불가피한 상황 또는 간식 등이 아닌 대안학교 급식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유연한 집행을 한 것은 아닌지 등 급식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살레시오회의 주요사업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서울시에서 위탁한 드림센터 내 성문화센터 외에는 성상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청소년의 성상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이한바, 성문화센터를 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와 일괄하여 본 수탁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재)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의 주요사업 〉

- 교육사업 : 학교교육, 직업교육, 인성교육, 대안교육
- 복지시설운영 : 그룹홈, 쉼터, 법원연계 시설
- 출판·미디어사업 : 출판사
- 종교교육, 선교사업
- 청소년지도자 양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597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2012.10.01.부터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17.07.07.부터 3년간 재위탁 하여 2020.06.30.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2년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2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
- 다. 현 수탁법인이 위기청소년 종합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2.06.30.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 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One-Stop개념의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시설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현 위탁법인은 1956년 광주살레시오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활지원 등 올바르게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 법인으로 청소년교육, 상담, 복지에 기여하고 있음
-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원스톱 전문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가출청소년 일시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체험관), 대안학교(도시형, 위탁형), 인턴십 교육지원사업, 가정법원 교육명령 수탁기관, 사회가장자리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거리상담 등 청소년일시쉼터사업
-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대안교육 사업
-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활동 등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
- 청소년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모델 정립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시설규모 : 대지면적 22,650 m^2 , 건물연면적 6,462 m^2
(지하 1층, 지상 4, 5층)
- 주요시설 : 상담실, 집단상담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청소년 일시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룸학교, 꿈에학교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2년(2020.7.1. ~ 2022.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80백만원('20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46백만원, 운영비 458백만원, 사업비 1,176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한경숙(☎2133-4128)